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 (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박은경

I. 개정이유

육상·해상·항공 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및 물류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수집·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관련 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대안의 주요내용

1.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안 제36조 및 제37조)

- (1)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하나 또는 복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안 제44조부터 제72조까지)

- (1) 최근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환승센터의 설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환승기능과 상업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도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의 활성화가 어렵거나 환승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2) 국토해양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광역복합환승센터·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 및 관리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KTX역, 환승전철역, 공항터미널 등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및 물류의 접근 및 이동의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지원(안 제73조, 제89조 및 제90조)

- (1) 종전에는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철도·

해운·항공 등 교통수단간 통합적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수집·분석된 지능형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별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능형 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제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 교통체계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합적인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II. 특이사항

본회의심의(2009년 4월 30일)에서 원안가결되어 정부로 이송(2009년 5월 26일)되었으며, 2009년 6월 9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됨.(항공법 3개월, 산림보호법 9개월 경과후 시행) 진행과정 및 개정법조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처리의안 및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박은경